

이 사 회 의 사 록

일 시 : 2014년 3월 13일 09 시 00분

장 소 : 당사 회의실

이사 총수 : 3명

감사 총수 : 1명

출석이사수 : 3명

출석감사수 : 1명

의장인 대표이사 허승은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므로 소집절차를 생략하고,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됨을 선포하고 의사를 진행한다.

의장은 정관규정에 따라 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의장석에 등단하여 이 회의에서 의안을 상정하고 결의를 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됨을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제 1호 의안 : 제 8기(2013.1.1~2013.12.31) 재무제표 승인의 건

제 2호 의안 : 제 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

1. 소집일시 : 2014년 3월 31일 (월) 오전 10:00

2. 소집장소 : 당사 회의실

3. 보고사항

1. 감사보고

2. 영업보고

4. 부의 안건

제 1호 의안 : 제 8기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자본변동표, 현금흐름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승인의 건

제 2호의 안 : 정관일부 변경의 건

변경 전	변경 후
제8조(주식의 종류)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	<p>제8조(주식의 종류)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.</p> <p>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,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, 상환주식,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.</p>
신설	<p>제8조의2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 ①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배당우선 전환?상환주식(이하 이조에서는 "종류주식"이라 함)으로 하며, 그 발행주식의 수는 총 발행주식수의 10%를 초과하지 않는다.</p> <p>②종류주식은 참가적 우선주로서 발행가액 기준으로 매년 최저 연 1%의 현금배당을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하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..</p> <p>③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.</p> <p>④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,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</p> <p>⑤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</p>

변경 전	변경 후
	<p>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</p> <p>⑥ 배당결의가 있기 전에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는 회사에 미지급배당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.</p> <p>⑦ 종류주식은 발행일 이후 존속기간 만료 전일까지 언제든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</p> <p>⑧ 종류주식은 일주당 보통주 일주의 전환비율을 갖으며 조정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.</p> <p>⑨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접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⑩ 종류주주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부터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상환청구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.</p> <p>⑪ 종류주식의 상환금액은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%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</p>

제 3호의 안 : 외부감사법인 선임의 건

제 4호의 안 :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

제 5호 의안 :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

의장인 대표이사 허승은 이상의 회의의 각 목적의안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.

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본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다.

2014년 3월 13일

청광종합건설 주식회사

의장 대표이사 허승



사내이사 박정훈



사내이사 이금동



감사 심재술

